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특위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5년 4월 일

제 안 자 : 임경만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런데도 구미시 의회는 개인별 의원들의 구미시 및 읍·면·동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한 화합의 저해요소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내부의 갈등에 따른 내홍으로 37만 시민의 권익과 복지, 구미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대표인 의원들은 감정을 떠나 이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구미시 의회 의원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계파별·분파별 갈등과 정쟁보다는 화합과 미래의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대표라는 객관적 입장에서 의원 개인간의 화합을 사전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는 구미시 발전과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합당한 사안이며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써 행해야 할 공인의 덕목으로 판단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이에 응하는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구미시의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가칭)구미시의회화합특위를 구성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진실코 시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복귀하고자 한다. 지금 구미시 의회는 화합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생과 복지에 기여하고 앞장서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최선의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미시 의회가 풀어야할 난제는 사과와 이에 대한 대의적 시각에서의 수용만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구미시의회 화합 발전 특위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가. 구성인원 : 7명(위원장1, 간사1, 위원5)
- 나. 존속기간 :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다. 활동내용 :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심사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 설치)
-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